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05월 04일 23시 16분



목차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목차 | 2 |
| 보도자료 - 건설 | 3 |
| 국지도 22호선 및 해안가 '경관지구 지정' | 3 |

보도자료

해명자료

국지도 22호선 및 해안가 ‘경관지구 지정’

2019.12.02 조회수 439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담당자 하인대 연락처 061-659-4013

- 돌산·소라·화양·화정 8개소 290만㎡…건물 높이 및 공장 등 입지 제한

여수시 국가지원지방도(국지도) 22호선 주변과 해안가 일부가 경관지구로 지정된다.

이번 조치로 여수시에 있는 수변축 대부분이 경관지구로 지정·관리될 전망이다.

여수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여수시가 입안한 돌산을, 소라면, 화양면, 화정면, 국지도 및 해안가 290만㎡에 대한 경관지구 지정을 원안대로 의결했다.

이번에 지정된 경관지구는 ▲국지도 22호선 덕양교차로~화양면 안포 ▲화정면 백야대교~백야등대 삼거리 ▲화양면 용주~호두 ▲화양면 대서이~구미 ▲돌산을 무슬목~평사 ▲돌산을 월전포~안굴전 ▲돌산을 계동 해안가 ▲돌산을 방죽포~소울 해안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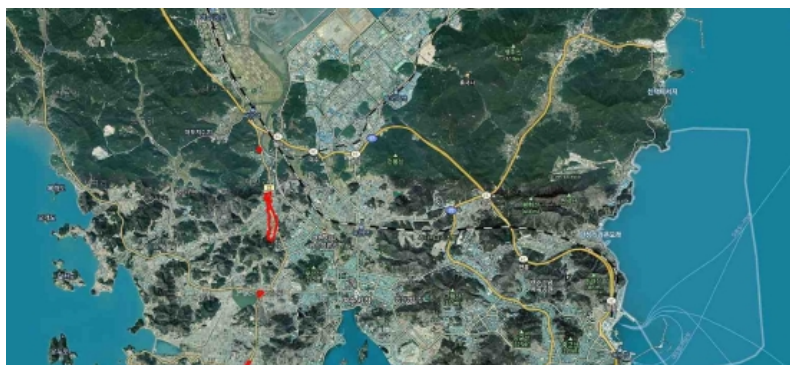
앞으로 이들 지역은 건축물 높이가 3층, 12m이하로 한정되고, 자연순환시설, 공장, 묘지 관련시설 등의 입지가 제한된다.

여수시는 12월 중 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) 결정과 지형도면 고시를 진행해 경관지구 지정을 발효할 방침이다.

이와 함께 시민 재산권 보호와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국지도 22호선과 해안 수변축 일원 559만㎡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1년 이상 앞당겨 해제할 계획이다.

시 관계자는 “국가지원지방도 22호선 개통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아름다운 해안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경관지구 지정을 추진하게 됐다”면서 “시민의 양해와 협조를 당부한다”고 말했다.

여수시는 지난 2017년 여수밤바다 주변과 도시지역 내 해안 수변축 일원을 특화·시가지경관지구와 고도지구로 지정한 바 있다.



(<http://www.yeosu.go.kr>)



첨부파일

[전체\(Zip\)다운로드](#)

 1. 여수시, 국지도 22호선 및 해안가 '경관지구 지정'.jpg (605 hit/ 322.9 KB) ↓

[미리보기](#)

목록

이전글

여수시 화정면, 사랑의 돼지저금통 후원

다음글

여수시, 자랑스런 기업인 3명 시상

COPYRIGHT © YEOSU-CITY. ALL RIGHTS RESERVED.

Yeosu Web Contents

